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35호

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, 02-970-9126

제정 2021. 9. 1.

개정 2022. 7. 8.

일부개정 2023. 2.20.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7. 8.>

제2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국가연구개발사업"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.
- 2. <삭제 2022. 7. 8.>
- 3. "학생인건비"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. <개정 2022. 7. 8.>
- 4. "학생인건비통합관리" 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'연구책임자 단위'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5. "전산시스템"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

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.

- 6. "연구책임자 단위"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통합관리계정"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.
- 8. "학생인건비지급률"이란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)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으로나 군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. 〈개정 2022. 7. 8.〉
- 9. "통합관리기관"이란 학생인건비 사용 연구개발기관 중 전산시스템 등 일정 요 건을 갖춘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것이며, 본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. <신설 2022. 7. 8.>
- 제3조(적용 범위) ① 본 규정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·석사·박사학위과정(통합과정 포함)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1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2. 수료생 중 본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- 3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

###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의무

제4조(통합관리기관의 의무)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책

임과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22. 7. 8.>

- 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에 관한 사항
- 2.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학생인건비 수입 · 지출 ·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
- 5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
- 6. 학생연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「연구실안전법」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- 7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본교 산학협력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제5조(계정책임자의 책임과 의무)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  - 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
  - 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
  - 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
- 제6조(학생연구자의 책임과 의무)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  - 1. 계정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"연구참여확약서"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
  - 2. 연구수행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계정책임자에게 보고

- 3. 학적 변동, 업무 수행 불가능,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계정책임자 및 본교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
- 제7조(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) 계정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, 졸업요건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7. 8.>

###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 · 연구 활동 보장

- 제8조(연간 활용계획 수립)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정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,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참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연구참여확약 체결) ① 본교 산학협력단장 및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을 학기(또는 학년) 단위로 체결하고,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7. 8.〉
- ② 연구 수행 내용, 역할, 참여 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.
- ⑤ 학생인건비지급률은 학생연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질·양에 따른 금액으로 책정한다.
- ⑥ 연구참여확약서는 학생연구자의 신규 등록·참여기간 변경·지급률 변경 시 재

작성이 가능하고, 불가피한 사유로 작성을 달리할 수 있다.

- 제10조(연구참여확약 변경) 본교 산학협력단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2, 7, 8,>
  - 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 <개정 2023. 2. 20.>
  - 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  - 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  - 4. 학생연구자가 질병 · 실종 · 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 - 5.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<신설 2023. 2. 20.>
- 제11조(학업·연구 활동 보장 등) ①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"연구참여확약서"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·외 기여·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.
  - ③ 학생연구자는 "연구참여확약서"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계정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

- 제12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 단, 학·석사연계과정은 석사과정 기준, 석·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기준으로 일괄 적용한다. <개정 2023, 2, 20.>
  - 1. 학사과정 : 월 1,300,000원 <개정 2023. 2. 20.>

2. 석사과정 : 월 2,200,000원 〈개정 2023. 2. 20.〉

3. 박사과정 : 월 3,000.000원 〈개정 2023. 2. 20.〉

제13조(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) ① 본교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, 학생인건비 재원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7. 8.>

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, 연구 성과에 따라 연구수당·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7. 8.>

제14조(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)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연구과제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

- 제15조(통합관리계정 설정) 본교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한다.
- 제16조(학생인건비 지급) ① 계정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에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연구자 인적정보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계정책임자가 학생연구자를 등록할 때에는 "연구참여확약서"를 작성하여 본 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학적이 변동(졸업, 학위 변경, 휴학, 제적 등) 되거나 학생인건비지급률 및 참여 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, 매월 지정일까지 학생연구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, 7, 8,>

- ④ 본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,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지정일에 정기적으로 학생연구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. 다만, 그 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일에지급한다. 〈개정 2022. 7. 8.〉
- ⑤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한다. ⟨개정 2022. 7. 8.⟩
- 제17조(학생인건비 관리) ① 본교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,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하여야 한다.
  - ② 〈삭제 2022. 7. 8.〉
  -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의 이자 산정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2, 7, 8,>
- 제18조(자체 점검) 본교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아울러 자체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7. 8.〉
- 제19조(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)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본교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

- 제20조(재정운영 정보 공개) ①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 발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교 산학협력단 또는 계정 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본교 산학협력단 또는 계정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21조(인격권·건강과 휴식·안전 보장) ①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.
  - 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③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, 학생연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고충·상담 창구운영) 본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, 학생 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·상 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,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위반 시 조치) ①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 등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제반 절차에 따라 계정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학생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계정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 감사실 등 본교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있다. <개정 2022. 7. 8.>
- ③ 본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, 계정책임자의 개인 평

가에 반영, 학생연구자 정원(TO) 조정, 정계위원회 회부, 계정책임자 정계 등 필요 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2, 7, 8., 2023, 2, 20.> 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제24조(기타)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[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| 제6장을 따른다.

부 칙<제634호, 2021. 9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694호, 2022, 7, 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735, 2023, 2,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, 3, 1.부터 시행한다.

#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

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(이하 "기관의 장"이라 한다)과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 하다.

### 1. 학생연구자 인적사항

성 명		학 번		생년월일
소 속 (학과명)		과정	(	) 과정
국가연구자번호				
주 소				
연락처	(휴대전화번호)		(E-mail)	

### 2. 연구참여정보

- 가. 연구참여기간 : 20 . . . ~ 20 . . .
- 나. 담당업무(역할):
- ※ 연구수행내용,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
- 다. 연구책임자계정 월평균 지급률 :
- ※ 지급률=월지급액 /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
- 라. 학생인건비 월평균 지급액 : 원(세금 포함)
- 마.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 일
- 바. 지급방법 :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
- ※ 참여중단·종료 시 중단·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(월 등)수에 대해 일할(월할 등) 계산하여 지급함
- 사.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

성 명		
소 속 (학과명)		직 급
연락처	(연구실)	(E-mail)

### 3. 기타 확약사항

- 가.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- 나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 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.
- 다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 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.
- 라. 기관의 장 및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123조의 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, 상해·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마. 계정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
- 바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부당회수)하지 않는다.
- 사.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 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아.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,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자.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 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20 년 월 일

학생연구자 : (서명 또는 인)

계정책임자(연구책임자계정): (서명 또는 인)

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: 서울과학기술대산학협력단장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2호 서식] 〈신설 2022. 7. 8.〉

###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

□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

※ 점검 시 유의사항: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

구분	평가 항목	평가결과
		(O/X)
권익 보호	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개발활동 보장, 처우 개선, 인권·권익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	
전산시스템 운영	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	
계정 설정 및 관리	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	
수입·지출· 잔액 관리	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	
계상기준	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	
연구참여확약서	제91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·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(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)	
부당회수 방지 노력	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(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, 홍보, 윤리교육 등 실적)	
상해·사망 대비 보험 보장	학생연구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	

#### □ 전산시스템 점검사항

구분	평가 항목	평가 내용	평가결과 (○/X)
1. 학생인건비 통합관리	학생인건비 총액관리	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·지출·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	
	학생인건비 계정설정	기관·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(과제별)·지출(계 정별) 현황 관리	
	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	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(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)	
	학생인건비 지급·관리	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(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,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, 변경내역)	
2. 학생인건비 지급·관리	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	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(지급계 좌정보, 지급예정일),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	
	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	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(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)	
	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	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 상 학생 직접 확인	
	시스템연동	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(통합이지바로) 상호연계	

<sup>\*</sup>본 문서의 승인은 전자날인으로 갈음한다.